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090호 2015. 06. 01.(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7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7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7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7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77호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 8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732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3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7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 3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7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 5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740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6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741호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
조례」 입법 예고 ----- 8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742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 9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743호 공시송달 공고 ----- 100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7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5.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경서로 64외 1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5. 29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5-05-29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33-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 64 (경서동)	2009-09-22	경서지구를 관통하여 경서지구의 지명을 따 경서로로 명명	
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40-7, 840-4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146 (원당동)	2008-12-31	고산후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	
3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55-17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678번길 30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7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124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8번안길 16 (경서동)	2013-07-30	보석로1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72-8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394번길 41-5 (왕길동)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9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657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 46 (석남동)	2009-09-22	도로가 지나는 석남동이 동명을 따 명명 옛 석곶면의 남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	
7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47-8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15 (검암동, 칼리아)	2009-09-22	싱아풀이 많아 싱아고개로 불렸던 승학고개의 이름을 따 명명	
8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49-14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06번길 80 (검암동, 하모니힐타운)	2009-09-22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48-17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06번안길 80 (검암동, 리베라)	2009-09-22	승학로506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49-11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06번안길 89 (검암동, 하모니힐타운)	2009-09-22	승학로506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55-23	인천광역시 서구 열우물로 227 (가좌동)	2009-07-06	열우물고개를 통과하는 도로로 십정동의 유래가 된 열우물을 인용하여 제명	
12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455-22	인천광역시 서구 열우물로 231 (가좌동)	2009-07-06	열우물고개를 통과하는 도로로 십정동의 유래가 된 열우물을 인용하여 제명	
1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0-39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89번길 14-20 (원창동)	2009-09-22	원창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70-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149번길 10 (연희동)	2012-03-30	청라에메랄드로의 시작점에서 1,4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61-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233번길 14-1 (경서동)	2012-03-30	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2,3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61-1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233번길 20 (경서동)	2012-03-30	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2,3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0-1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59번길 16 (경서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5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인사(www.sso.incheon.kr)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7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5. 05.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길주로75번길 9외 3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고시일 : 2015-05-29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석남동 520-40	길주로75번길 9	2015-05-19	건물 멸실	
2	인천 서구 석남동 223-279	건지로109번길 36	2015-05-19	건물 멸실	
3	인천 서구 심곡동 337-3	승학로 227-1	2015-05-21	건물 멸실	
4	인천 서구 가좌동 173-245	보도진로 59	2015-05-21	건물 멸실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5-7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당하동 1067-1번지 외 2필지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2. 사업주체 : 서인천개발(주) 대표 신종석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67-1번지 외 2필지
 - 나. 대지면적 : 17,488.1m²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89,800.807m²(지하 2층, 지상 18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 8개동(아파트 53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1개동
 - 마. 사 업 비 : 172,104,577천원
4. 사업기간 : 2010. 06. ~ 2017. 08.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77호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1.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및 같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기획예산실(☎032-560-5902), 검암경서동주민센터(☎032-560-300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2015. 6. 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I. 재활용단지 지정(개발계획)

1. 재활용단지 명칭

-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

2. 재활용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지역내 발생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21C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기존 사업체의 노후화된 시설정비와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인천 서구 지역 환경 및 경관 개선 도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72-3번지 일원
- 면 적 : 56,256㎡

4. 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개발기간 : 2013년 ~ 2016년
-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 재활용산업의 개념을 충족하는 다음의 업종
- 산업시설용지에 재활용산업에 해당하는 모든 유치업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며, 산업시설용지 분양계획시 업종간 연관성 고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 중분류		비 고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상 재활용산업의 개념을 충족 할 것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8	폐기물 수립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원료재생업에 한함)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72-3번지
- 성 명 :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 잡종지, 답, 제방의 지목으로 이용

구 분	계	답	잡종지	제 방	기 타	비 고
면 적 (㎡)	56,256	1,826	52,491	1,939	-	
구성비 (%)	100.0	3.3	93.3	3.4	-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변 경		비 고
	면 적 (㎡)	구성비 (%)	
계	56,256	100.0	
산업시설용지	38,097	67.7	
지원시설용지	482	0.9	
공공시설용지	17,677	31.4	
공원·녹지	2,900	5.1	
공 원	473	0.8	
녹 지	2,427	4.3	
유수지	797	1.4	
수질오염방지시설	1,088	2.0	
주차장	445	0.8	
도 로	12,447	22.1	시설도로 : 11,724㎡

※ 상기 도로면적은 도시계획시설결정도로 및 사업부지 경계부 존치되는 현황도로를 합산한 면적임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시 설 명	주요내용	면 적(㎡)	비 고
도 로	4개 노선 (823 m)	중로(2개노선) : 720m 소로(2개노선) : 103m	
주 차 장	1개소	445	
공 원	1개소	473	소공원
녹 지	2개소	2,427	완충녹지
유 수 지	1개소	797	
수질오염방지시설	1개소	1,088	

1) 교통시설 계획

가) 도로계획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 계	4	823	11,724	-	-	-	3	753	11,268	1	70	456
중 로	2	720	10,991	-	-	-	2	720	10,991	-	-	-
소 로	2	103	733	-	-	-	1	33	277	1	70	456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4개 노선										
소계	중로	2개 노선				720					
신설	중로	2	811	15	집산도로	480	동측구역계 (372-3)	북측구역계 (372-3)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812	15	집산도로	240	중로2-811	중로2-811	일반 도로		
소계	소로	2개 노선				103					
신설	소로	2	504	8	국지도로	33	중로2-811	남측구역계 (372-3)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509	6	국지도로	70	중로2-811	남측구역계 (372-3)	일반 도로		

나) 주차장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경서동 372-3	-	증) 445	445		

2) 공간시설 계획

가) 공 원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서부 자원순환 소공원1	소공원	경서동 372-3	-	증) 473	473		

나) 녹 지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	증) 2,427	2,427		
신설	1	서부 자원순환 녹지1	완충녹지	경서동 372-3	-	증) 1,173	1,173		
신설	2	서부 자원순환 녹지2	완충녹지	경서동 372-3	-	증) 1,254	1,254		

3) 방재시설계획

가) 우수지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우수지	저류시설	경서동 372-3	-	증) 797	797		

4)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사설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경서동 372-3	-	증) 1,088	1,088		

5) 용수공급계획

○ 공촌정수장에서 기존 상수관로로 분기해 단지내 전량공급

구 분	일최대용수량 (㎥/일)	시간최대 용수량 (㎥/일)	비 고
계	205.85	305.03	
공업용수량	190.87	286.31	
생활용수량	14.98	18.72	

6) 하수처리계획

가) 오·폐수처리계획

○ 오·폐수처리는 사업지구내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전량처리

구 분	일평균오·폐수량 (㎥/일)	일최대오·폐수량 (㎥/일)	시간최대오·폐수량 (㎥/일)
계	98.04	98.04	142.60
폐수량	86.92	86.92	126.43
오수량	11.12	11.12	16.17

나) 오·폐수처리시설 계획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경서동 372-3	-	증) 1,088	1,088		

7) 폐기물처리계획

가) 폐기물량 산정

구 분	원단위	적용원단위	계획인구	발생량
생활폐기물	0.78kg/인·일	0.23	156인	35.9kg/인·일
분 뇨	0.77L/인·일	0.23		35.9L/인·일
사업장폐기물	3.08kg/인·일	0.90		140.4kg/인·일

주) 적용원단위는 인천광역시의 총 발생량으로 11개의 구(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군(강화군, 옹진군)·청(경제청)의 발생량을 고려하여 30%를 적용함

나) 폐기물 처리계획

- 생활폐기물은 매립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등으로 구분 및 발생하는 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 사업장 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성상별로 분리수거 후, 단지내 재활용산업에서 최대한 재활용하고, 기타 부산물 및 처리가 안되는 폐기물은 위탁처리
-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보관시설에 보관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8) 통신공급계획

- 한국통신 인천지사와 협의하여 공급토록 계획

구 분	규 모	단위수요	수요량(회선)	비 고
총 계	-	-	19	여유율 30%적용
산업시설용	150	1대/10인	15	
지원시설용	5	1대/3인	2	
공급처리시설용	1	1대/3인	1	
공중전화	156	1회선/500인	1	

9.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비 총괄

구 분	사업비(백만원)	구성비(%)	비 고
합 계	27,283	100.0	
설계비	440	1.6	
공사비	4,327	15.9	
분담금 및 보조비	119	0.4	
보상비	22,397	82.1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단계 (2013년)	2단계 (2014년)	3단계 (2015년)	4단계 (2016년)
합 계	27,283	175	175	23,807	3,126
국 비	-	-	-	-	-
특별교부세	-	-	-	-	-
도 비	-	-	-	-	-
시·군·구비	-	-	-	-	-
지방채	-	-	-	-	-
기타(민자)	27,283	175	175	23,807	3,126

다. 재원조달계획

구 분	규 모(백만원)	내 용
총사업비	27,283	
보상비	22,397	
조성비	4,886	조사설계비, 공사비, 분담 및 보조비, 부대비 포함
자체부담금	27,283	사업비의 100% 반영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붙임

11. 에너지 사용계획

1) 전력공급계획

○ 소요전력은 한전과 협의하여 인근 변전소로부터 공급토록 계획

구 분		용량	비 고
합성 설비용량 (kVA)	합 계	3,059	부등률 1.35적용
	산 업 시 설	2,971	
	지원 및 기반시설	88	
합성 최대부하 (kW)	합 계	2,307	
	산 업 시 설	2,228	
	지원 및 공공시설	79	

2) 에너지공급계획

○ 연료공급은 인천도시가스(주)의 배관망을 통하여 공급

(단위 : Gcal/년)

구 분	계	공정열		난방 /급탕	냉방용	취사용
		직접열	간접열			
계	53,278	36,840	11,086	5,045	302	5
생산시설용지	47,926	36,840	11,086	-	-	-
지원 및 기반시설용지	5,352	-	-	5,045	302	5
지원시설	1,901	-	-	1,594	302	5
수질오염방지시설	3,451	-	-	3,451	-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

한국표준산업분류(KSIC-9)		면적 (㎡)	구성비 (%)	비 고
대분류	중 분 류			
C.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8,097	10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재활용산업의 개념을 충족 할 것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8 폐기물 수렴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 기존업체 재입주

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사항없음

II. 실시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72-3번지

2. 사업의 명칭

-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

3. 사업의 목적

- 지역내 발생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21C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기존 사업체의 노후화된 시설정비와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인천 서구 지역 환경 및 경관 개선 도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72-3번지 일원
- 면 적 : 56,256㎡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시행방법 : 민간개발
- 시행기간 : 2013년 ~ 2016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 잡종지, 답, 제방의 지목으로 이용

구 분	계	답	잡종지	제 방	기 타	비 고
면 적 (㎡)	56,256	1,826	52,491	1,939	-	
구성비 (%)	100.0	3.3	93.3	3.4	-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변 경		비 고
	면 적 (㎡)	구성비 (%)	
계	56,256	100.0	
산업시설용지	38,097	67.7	
지원시설용지	482	0.9	
공공시설용지	17,677	31.4	
공원·녹지	2,900	5.1	
공 원	473	0.8	
녹 지	2,427	4.3	
유수지	797	1.4	
수질오염방지시설	1,088	2.0	
주차장	445	0.8	
도 로	12,447	22.1	시설도로 : 11,724㎡

※ 상기 도로면적은 도시계획시설결정도로 및 사업부지 경계부 존치되는 현황도로를 합산한 면적임

나. 기반시설계획

시 설 명	주요내용	면 적(㎡)	비 고
도 로	4개 노선 (823 m)	중로(2개노선) : 720m 소로(2개노선) : 103m	
주 차 장	1개소	445	
공 원	1개소	473	소공원
녹 지	2개소	2,427	완충녹지
유 수 지	1개소	797	
수질오염방지시설	1개소	1,088	

1) 교통시설 계획

가) 도로계획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 계	4	823	11,724	-	-	-	3	753	11,268	1	70	456
중 로	2	720	10,991	-	-	-	2	720	10,991	-	-	-
소 로	2	103	733	-	-	-	1	33	277	1	70	456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4개 노선										
소계	중로	2개 노선				720					
신설	중로	2	811	15	집산도로	480	동측구역계 (경서동372-3)	북측구역계 (경서동372-3)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812	15	집산도로	240	중로2-811	중로2-811	일반 도로		
소계	소로	2개 노선				103					
신설	소로	2	504	8	국지도로	33	중로2-811	남측구역계 (경서동372-3)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509	6	국지도로	70	중로2-811	남측구역계 (경서동372-3)	일반 도로		

나) 주차장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경서동 372-3	-	증) 445	445		

2) 공간시설 계획

가) 공 원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서부 자원순환 소공원1	소공원	경서동 372-3	-	증) 473	473		

나) 녹 지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	증) 2,427	2,427		
신설	1	서부 자원순환 녹지1	완충녹지	경서동 372-3	-	증) 1,173	1,173		
신설	2	서부 자원순환 녹지2	완충녹지	경서동 372-3	-	증) 1,254	1,254		

3) 방재시설계획

가) 우수지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우수지	저류시설	경서동 372-3	-	증) 797	797		

4)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사설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경서동 372-3	-	증) 1,088	1,088		

5) 용수공급계획

○ 공촌정수장에서 기존 상수관로로 분기해 단지내 전량공급

구 분	일최대용수량 (㎥/일)	시간최대 용수량 (㎥/일)	비 고
계	205.85	305.03	
공업용수량	190.87	286.31	
생활용수량	14.98	18.72	

6) 하수처리계획

가) 오·폐수처리계획

○ 오·폐수처리는 사업지구내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전량처리

구 분	일평균오·폐수량 (㎥/일)	일최대오·폐수량 (㎥/일)	시간최대오·폐수량 (㎥/일)
계	98.04	98.04	142.60
폐수량	86.92	86.92	126.43
오수량	11.12	11.12	16.17

나) 오·폐수처리시설 계획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경서동 372-3	-	증) 1,088	1,088		

7) 폐기물처리계획

가) 폐기물량 산정

구 분	원단위	적용원단위	계획인구	발생량
생활폐기물	0.78kg/인·일	0.23	156인	35.9kg/인·일
분 뇨	0.77L/인·일	0.23		35.9L/인·일
사업장폐기물	3.08kg/인·일	0.90		140.4kg/인·일

주) 적용원단위는 인천광역시의 총 발생량으로 11개의 구(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군(강화군, 옹진군)·청(경제청)의 발생량을 고려하여 30%를 적용함

나) 폐기물 처리계획

- 생활폐기물은 매립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등으로 구분 및 발생하는 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 사업장 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성상별로 분리수거 후, 단지내 재활용산업에서 최대한 재활용하고, 기타 부산물 및 처리가 안되는 폐기물은 위탁처리
-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보관시설에 보관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8) 통신공급계획

- 한국통신 인천지사와 협의하여 공급토록 계획

구 분	규 모	단위수요	수요량(회선)	비 고
총 계	-	-	19	여유율 30%적용
산업시설용	150	1대/10인	15	
지원시설용	5	1대/3인	2	
공급처리시설용	1	1대/3인	1	
공중전화	156	1회선/500인	1	

9.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비 총괄

구 분	사업비(백만원)	구성비(%)	비 고
합 계	27,283	100.0	
설계비	440	1.6	
공사비	4,327	15.9	
분담금 및 보조비	119	0.4	
보상비	22,397	82.1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단계 (2013년)	2단계 (2014년)	3단계 (2015년)	4단계 (2016년)
합 계	27,283	175	175	23,807	3,126
국 비	-	-	-	-	-
특별교부세	-	-	-	-	-
도 비	-	-	-	-	-
시·군·구비	-	-	-	-	-
지방채	-	-	-	-	-
기타(민자)	27,283	175	175	23,807	3,126

다. 재원조달계획

구 분	규 모(백만원)	내 용
총사업비	27,283	
보상비	22,397	
조성비	4,886	조사설계비, 공사비, 분담 및 보조비, 부대비 포함
자체부담금	27,283	사업비의 100% 반영

라.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구 분	면 적(m ²)	비 율(%)	비 고
합 계	56,256	100.0	
산업시설용지	38,097	67.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공급
지원시설용지	482	0.9	
공공시설용지	17,677	3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해 당해 시설물 관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녹 지	2,427	4.3	
소공원	473	0.8	
유수지	797	1.4	
수질오염방지시설	1,088	2.0	
도 로	12,447	22.1	
주차장	445	0.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공급

라.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해당사항없음

마.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별첨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출내역

구 분	면 적(m ²)	금 액(백만원)	비 고
합 계	17,213	975	
녹 지	2,427	271	
소공원	473	52	
유수지	797	45	
수질오염방지시설	1,088	471	
도 로	12,447	136	

2) 사업시행자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 해당사항없음

사. 산업단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 : 해당사항없음

아.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포함)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6,256	-	56,256	100.0	
도시 지역	소 계	-	증) 56,256	56,256	100.0	
	일반공업지역	-	증) 56,256	56,256	100.0	
	소 계	56,256	감) 56,256	-	-	
	자연녹지지역	56,256	감) 56,256	-	-	

나)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72-3 일원	합 계		56,256	-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56,256	인천서부 자원순환특화단지 구성에 따른 입주기업에 대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인천 서구 자원순환특화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구 경서동 372-3 일원	-	증)56,256	56,256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신설	1	서구 경서동 372-3 일원	56,256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1조에 의거 산업단지내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3)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① 도로

(1) 도로 총괄표

구 분	류별	합 계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4	823	11,724	3	753	11,268	1	70	456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720	10,991	2	720	10,991	-	-	-
	신설 소로	2	103	733	1	33	277	1	70	456

(2) 도로 결정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 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 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811	15	집산 도로	480	동측구역계 (경서동372-3)	북측구역계 (경서동372-3)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812	15	집산 도로	240	중로2-811	중로2-811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504	8	국지 도로	33	중로2-811	남측구역계 (경서동372-3)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509	6	국지 도로	70	중로2-811	남측구역계 (경서동372-3)	일반 도로				

※ 소로2-504호선은 현황도로(관습도로)의 단지 내 구간임

(3)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 2-811	• 도로신설 B=15m, L=480m	• 인천서부 자원순환특화단지 구성에 따른 획지분할 및 집산기능을 위한 도로 신설
-	중로 2-812	• 도로신설 B=15m, L=240m	• 인천서부 자원순환특화단지 구성에 따른 획지분할 및 집산기능을 위한 도로 신설
-	소로 2-504	• 도로신설 B=8m, L=33m	• 인천서부 자원순환특화단지 구성에 따른 기존현황 도로 연계도로 신설
-	소로 3-509	• 도로신설 B=6m, L=70m	• 인천서부 자원순환특화단지 구성에 따른 인접지역 연결도로 신설

② 주차장

(1)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경서동 372-3	-	증) 445	445		

(2)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신설 - A=4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단지 근로자 및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노외주차장 신설

나) 공간시설

① 공 원

(1)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서부 자원순환 소공원1	소공원	경서동 372-3	-	증) 473	473		

(2) 공원 결정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서부 자원순환 소공원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공원 신설 - A = 4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자에게 일시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제공을 위해 소공원 신설

② 녹 지

(1)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증)2,427	2,427		
신설	1	서부 자원순환 녹지1	완충 녹지	경서동 372-3	-	증)1,173	1,173		
신설	2	서부 자원순환 녹지2	완충 녹지	경서동 372-3	-	증)1,254	1,254		

(2) 녹지 결정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서부 자원순환 녹지1	• 위치 : 경서동 372-3번지 일원 - A = 1,173㎡	• 각종 공해 · 사고 ·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완충녹지 신설
2	서부 자원순환 녹지2	• 위치 : 경서동 372-3번지 일원 - A = 1,254㎡	• 각종 공해 · 사고 ·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완충녹지 신설

다) 방재시설

① 유수지

(1)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유수지	저류시설	경서동 372-3	-	증) 797	797		

(2) 유수지 결정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유수지	• 저류시설 신설 - A = 797㎡	• 강우로 인한 피해방지 및 단지내 원활한 우수배제를 위하여 유수지 신설

라) 환경기초시설

① 수질오염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경서동 372-3	-	증) 1,088	1,088		

(2)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수질오염 방지시설	• 폐수종말처리 시설 신설 - A = 1,088㎡	• 오 · 폐수를 1차적으로 처리하여 인근지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자 단지내 폐수종말 처리시설 신설

4)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①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합 계		38,097	-	38,097	
A1		10,973	A1	10,973	
A2		16,596	A2	16,596	
A3		5,161	A3	5,161	
A4		5,367	A4	5,367	

② 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B1		482	B1	482	

③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C1		445	C1	445	

④ 폐수종말처리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D1		1,088	D1	1,088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조서

①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1~ A4	산업시설 용지블록 A1~A6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및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재활용산업의 개념을 충족할 것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건축물은 지붕과 벽면을 갖추어야 함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는 동일하거나 서로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여 일관성 및 통일감 형성 • 지붕 설치시 경사지붕 설치 권장(평지붕 설치시 지붕면적 기준 생태면적률 30%이상 확보) • 대지내 모든 보관시설은 허가받은 건축물내에 설치하여 밀폐화 되도록하고, 외부 적치는 금지한다. 또한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한다. • 건축물과 대지경계는 방음·방진용 수목 식재를 권장 한다. 	
		색채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을 권장	
		건축한계선	• 종로 2-811, 종로2-812 예각교차구간 각각기준 건축한계선 4m 지정(회전구간 시야확보)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지분할 가능 • 건축한계선지정에 따른 대지내 공지는 단지내 휴계공간(쌈지공원 등)으로 활용 권장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준하여 설치할 것 	

주 1) 건축물 용도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분류표에 의한다.

② 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B1	지원시설 용지 블록 B1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제외) • 판매시설(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함)·연구소에 한함)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층수 5층(25m) 이하 		
		배 치	-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별 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 지붕 설치시 경사지붕 설치 권장 • 담장은 가능한 생울타리로 조성하도록 하고, 설치시 높이 1.2m이하로 설치하도록 권장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 사용 권장 		
		건축한계선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준하여 설치할 것 		

③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1	주차장 용지 블록 C1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주차장전용 건축물 건립시 주차장의 사용되는 비율은 연면적의 30% 이내로 하며, 허용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층수 5층 이하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장은 가능한 생울타리로 조성하도록 하고, 설치시 높이 1.2m 이하로 설치하도록 권장 	
		배 치	-	
		건축한계선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준하여 설치할 것 	
		기타	-	

④ 폐수종말처리시설 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D1	폐수종말 처리시설 블록 D1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대시설 포함)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0%이하 	
		높 이	-	
		형 태	-	
		배 치	-	
		건축한계선	-	
		기 타	-	
		기타	-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①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A4,	A1~A4,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출입 불허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름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표시된 도로구간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 진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대지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 도로의 교통처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웃하는 인접대지와 공동차량출입구를 설치하거나 차량출입구의 위치가 인접대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

② 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1	B1	대지내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출입 불허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름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표시된 도로구간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 진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 경미한 변경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 향후 관련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법령을 적용

마) 지침적용 사항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나 인천광역시 관련조례에 따른다.

5) 공원조성계획 결정

가) 시설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시설개소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부지면적 증감내용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473.00㎡	27개소					
공 원 시 설	기반 시설	광장	87.76㎡				
	조경시설		4.25㎡	18개소			
	휴양시설		1.52㎡	3개소			
	운동시설			3개소			
	편의시설			3개소			
녹지 및 기 타	379.47㎡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개소	구 조	규 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부지 면적증감 내용
								바닥 면적	연면적		
합	계			473.00㎡	27개소						
기 반 시 설	계			87.76㎡							
	진입광장	1-1		10.35㎡							
	휴게광장1	2-1		21.9㎡							
	휴게광장2	2-2		42.78㎡							
	연결광장	3-1		12.73㎡							
조 경 시 설	계			4.25㎡	18개소						
	반원형 파고라	①			1개소 (10.5㎡)						
	디딤석	②		4.25㎡	17개소						
휴 양 시 설	계			1.52㎡	3개소						
	앉음벽	③		1.52㎡	1개소						
	등의자	④			2개소 (2.0㎡)						
운 동 시 설	계	⑤			3개소						
	체력단련 시설				3개소						
편 의 시 설	계	⑥			3개소						
	공원등				3개소						
녹지 및 기타시설				379.47㎡							

자. 종전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 : 해당사항없음

차. 문화재의 보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 해당사항없음

카. 피해영향조사서 : 해당사항없음

10.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 : 게재생략

11.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관련도서 : 「별첨」(게재생략)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획예산실 (전화 : 032-560-5902)

※ 별첨 (게재생략)

① 위치도

②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 도서

③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붙임

□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소유자		비 고
					주 소	성 명	
1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2-3	잡	52,491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7-241	인천항만공사	
2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2-4	답	1,826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7-241	인천항만공사	
3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2-5	제	882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7-241	인천항만공사	
4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2-8	제	1,057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7-241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732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5.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5. 29.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결정·공시대상

- 2015.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7,963필지)

나. 결정·공시일 : 2015. 5. 29

다. 결정·공시내용 : 필지별 m²당 가격

라. 결정·공시내용 열람

- 서구청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incheon.go.kr/sis>)⇒

「부동산 정보조회」 ⇒ 「개별공시지가」

2. 이의신청

가. 대 상 :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나. 신청기간 : 2015. 5. 29 ~ 6. 30.

다. 신청인 :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 제출서류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구 토지정보과)

※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 「전자민원」

⇒ 「민원사무편람 서식」 ⇒ 「지적/부동산」 란에 게재

마. 접수처 : 서구청 토지정보과

바.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인 2015년 6월 30일 까지 소인분에 한함) 및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 접수

사.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3. 문의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 560-4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7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1. 개정취지

- 청소년 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및 별지서식을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별표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정비
-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인재육성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893) 및 FAX(560-2716)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 정 이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별표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신고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개정 ○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 제1조~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개 정 안	“별 지 참 조”
신·구조문대비표	“별 지 참 조”
관계법령 발취	“별 지 참 조”
관련사업 계획	“해 당 없 음”
예산수반사항	“해 당 없 음”
기타 참고사항	“해 당 없 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로 하고, “청소년유해환경신고”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9세 미만의 자를”을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청소년 유해환경”을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한다.

제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별표 1의 규정”을 “별표 1”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1항에 따라”로, “청소년유해환경”을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과징금부과등”을 “과징금 부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등의 규정에 의하여”를 “등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익근무자등”을 “공익근무자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연”을 “해당연”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범위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를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로, “기준에 의한다”를 “기준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로 한다.

제7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2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제3조 관련)

위 반 행 위	지급액 (건당)
1.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2.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3.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5.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6.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10만원
7. 법 제30조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10만원
8.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9.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10.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11.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1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13.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1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16.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청소년보호법</u>」(이하 법 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u>청소년유해환경신고</u>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청소년 보호법</u>」 제49조에 따라 <u>청소년 유해환경 신고</u>----- ----- ----- ----- ----- -----.</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u>각호</u>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청소년</u> 이라 함은 <u>19세미만의</u> 자를 말한다. 2. <u>청소년유해환경</u> 이라 함은 <u>청소년유해매체물</u> <u>청소년유해약물</u> <u>청소년유해업소</u> <u>청소년폭력</u> 및 <u>학대</u> 등 <u>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u> 등을 말한다. 	<p>제2조(정의) ----- -----<u>각 호</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u>만 19세 미</u> <u>만의 사람</u>-----. 2. <u>청소년 유해환경</u> ----- ----- ----- ----- ----- -----.
<p>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u>의한</u>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u>별표 1의</u>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한한다.</p>	<p>제3조(신고대상) -----<u>따른</u>----- ----- -----<u>별표 1</u>----- -----.</p>

제4조(신고방법등) 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에 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포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고방법등) ① -----

---그 밖의-----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 4.그 밖의-----

②제1항에 따라-----

-----따라-----

-----.

제5조(포상지급 대상) ① -----
-----제4조제1항
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 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 된 경우

1.-----등에 따라-----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 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등 이 신고하는 경우

2.-----
-----공익근무자 등-----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신고인에 대하여 당해연도 포 상금 수령횟수가 3회를 초과 할 경우

4.-----해당연-----

--

제6조(지급) ① 포상금은 예산의 별 위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포상금지급 기준에 의한다.

제6조(지급) ① -----별 위 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기준을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 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 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 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우에-----
-----.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 징 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7조(환수) -----
-제6조에 따른-----

-----따라-----
-----.

관계법령 발췌

□ 청소년 보호법

제22조(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제9조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신설 2014.3.24.>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4.3.24.>

1.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수입한 자
2.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수입한 자

⑦ 제5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 방법, 통보 시기, 통보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⑧ 제4항에 따른 표시의 문구, 크기와 제6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3.22., 2014.3.24.>

⑨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매체물"은 각각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본다. <신설 2013.3.22., 2014.3.24.>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

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7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1. 개정취지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별지서식을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4호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인재육성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893) 및 FAX(560-2716)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 정 이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제1호 ~ 제4호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 제2조~제4조, 제6조~제8조, 별지제1호~제5호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개 정 안	“별 지 참 조”
신·구조문대비표	“별 지 참 조”
관계법령 발췌	“별 지 참 조”
관련사업 계획	“해 당 없 음”
예산수반사항	“해 당 없 음”
기타 참고사항	“해 당 없 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수련시설사용”을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수련시설 사용”으로, “의거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 취하원”을 “따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 취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선순위에 의한다”를 “우선순위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3조 중 “제9조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제10조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6조제6호 중 “발생시”를 “발생 시”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운영”을 “제11조에 따른 수련시설 운영”으로,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최근 3년 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

제8조제1항 중 “90일전”을 “9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월말”을 “1월 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발급번호 : 제 호

수련시설명				
신청인	주소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단체명	전화		
내용	사용시설명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목적			
	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		
	사용료구분	[일반]	[감면]	
	변경신청내용			
	변경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변경신청사유			
	사용요금			
	첨부	행사계획서 1부		
<p>「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귀하</p>				
※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뒷면)

이 용 자 준 수 사 항

1.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5.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7. 시설사용 승낙 후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고하여야 합니다.
 8. 수련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타 사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을 취소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취하원

발급번호 : 제 호

수련시설명			
신청인	주소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단체명	전화	
내	사용시설명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목적		
	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	
	사용료구분	[일반]	[감면]
	취하시설명		
용	취하신청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취하사유		
	납부한 사용료		
	첨부	증빙자료 1부	
<p>「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취하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 취하원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p>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발급번호 : 제 호

수련시설명				
신청인	주소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단체명		전화	
내용	사용인원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감면신청액			
	감면사유			
<p>「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 구비서류 :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발급번호 : 제 호

수련시설명				
신청인	주소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단체명	전화		
내용	사용인원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반환신청액			
	반환청구사유			
<p>「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 구비서류 : 사용료 반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신청 및 구비서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운업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5. (생략)
- 6.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실적
- 7.·8. (생략)

제8조(예산 및 운영결산 보고) ① 수탁자는 수련시설 운영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말 9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상황을 매 월말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반환신청) -----제10조에 따른-----

-따라-----
-----.

제7조(위탁운영 신청 및 구비서류) -----제11조에 따른 수련시설 운영-----
----- 따라-----

-----.

- 1. ~ 5. (현행과 같음)
- 6. 최근 3년 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
- 7.·8. (현행과 같음)

제8조(예산 및 운영결산 보고) ① -

-----90일 전-----
-----.

②-----

-----1월 말-----
-----.

관계법령 발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740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취지

- 조례 규제개선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조항에 대하여 「민법」 등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 사용료 감면 규정 정비 및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그린카드’ 사용 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별표 1]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명칭 및 위치)
 - [별표 1] 의 청소년수련시설 위치 정비
- 제9조(사용료의 감면)
 - 제2항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개정 및 그린카드 사용 시 감면규정 신설
- 제14조(위탁의 해지), 제15조(손해배상)
 - 조례 규제개선 정비대상 조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인재육성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893) 및 FAX(560-2716)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이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규제개선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조항에 대하여 「민법」 등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시행 예정(2015.7.1.)에 따라 관련 사용료 감면 규정 정비 및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그린카드’ 사용 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별표 1]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명칭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1] 의 청소년수련시설 위치 정비 ○ 제9조(사용료의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항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개정 및 그린카드 사용 시 감면규정 신설 ○ 제14조(위탁의 해지), 제15조(손해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 규제개선 정비대상 조항 개정 ○ 제1조, 제3조, 제7조~제20조, [별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개 정 안	“별 지 참 조”
신·구조문대비표	“별 지 참 조”
관계법령 발취	“별 지 참 조”
관련사업 계획	“해 당 없 음”
예산수반 사항	“해 당 없 음”
기타 참고사항	“해 당 없 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를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20인”을 “20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사람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 범위에서 감면한다. 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감면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설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재해 기타”를 “재해, 그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5일전”을 “5일 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을 “제11조”로, “기타 운영상”을 “그 밖의 운영 상”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제1

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에서 규정한”을 “제4조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제4항을 삭제하고,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2항까지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련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한 결과에 따라 관계규정에 의거”를 “결과에 따른 관계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에 따라”로 한다.

제19조 중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

리조례」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하여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2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서구청소년수련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92 (원창동 93-5)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264 (심곡동 241-2)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90 (가정동 430-21)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88번길 3 (마전동 904-4)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등(제8조 관련)

1. 시설사용료(서구 청소년수련관에 한한다)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오전 (08:00-12:00)	오후 (12:00-18:00)	야간 (18:00-22:00)	비 고
공 연 장	공연(영화)	30,000	45,000	70,000	
	행 사	45,000	65,000	90,000	
강의실 등	교 육	20,000	30,000	40,000	1실 기준

【 비 고 】

1.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2. 시설사용 허가 시 사용자가 사용시간(오전, 오후, 야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계산한다.
3.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2시간 이상 초과 사용했을 경우, 그 초과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면 다음회 사용료의 50%,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면 다음회 사용료의 30%, 30분 미만이면 다음회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또한 22시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15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4.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함.

2. 부속설비 사용료(서구 청소년수련관에 한한다)

(단위 : 원)

부속설비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피 아 노			1회공연	30,000	
무대시설	공 바 톤		1회1개	10,000	
무대음향	마이크		기본3개 추가 1개당	10,000 3,000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특수마이크	PIN	1일1개	30,000	
		W/L	1일1개	20,000	
	M R (A R , B G M)		1시간	10,000	
	L C D 프 로 젝 트		1회공연	20,000	
무대조명	조 명		1시간	20,000	○ 조명연출을 필요로 하는 조명에 대해서만 조명료를 징수함.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특수효과기	포그머신 (액별도)	1회공연 1대	20,000	
		드라이아이스 (액별도)	1회공연 1대	10,000	
냉난방	○ 계절에 따른 봄·가을철, 여름철, 겨울철로 구분하여 시설별 시간 당 냉난방기 소비전력, 한국전력 전기요금표 등에 10%가산한 범위에서 산출한 사용료를 계산함.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냉방 : 6월~8월, 난방 : 11월~3월 ※ 기온급변 시 사용자와 협의조정 가능함.				
대소도구	○ 1회 사용료 : 단위 당 취득가액이 100,000원 이상인 것에 한하여 취득가액에서 매년 감가상각(5%)비를 감한 자산가액의 5%를 기준 사용료로 계산함.				

【 비 고 】

1. 피아노, 무대시설, 무대음향, 무대조명 중 공연(행사)연습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3. 수영장(서구 청소년수련관에 한한다)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성 인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이하	
강습회원 (월 이용)	개 인	52,000	40,000	35,000	
	단 체	43,000	33,000	30,000	
자유회원 (월 이용)	개 인	42,000	30,000	25,000	
	단 체	36,000	24,000	20,000	
1일 이용	개 인	3,000	2,000	1,500	
	단 체	2,800	1,500	1,200	

【 비 고 】

1.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20명 이상이고, 인솔자에 따라 인솔되며, 동시에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 강습회원(월 이용)이란 수영프로그램을 1개월 단위로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유회원(월 이용)이란 수영강습을 받지 아니하고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청소년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시 수강료를 할인 또는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4. 수강료 : 1시간 기준 4,000원 범위(단, 교재비와 재료비는 별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 ----- ----- ----- -----.</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u>자</u>를 말한다.</p> <p>2.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u>규정에 의한</u>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p> <p>3. “수련시설”이라 함은 청소년을 주 이용대상으로 청소년의 심신수양, 자질함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p>	<p>제3조(정의) ----- -----.</p> <p>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 ----- ----- -----.</p> <p>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 ----- -----.</p> <p>3.----- ----- ----- ----- -----.</p>

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규정된 시설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

4.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은 50%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

4.-----20명-----
-----.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제8조(사용료 등) ① -----

----- 범위-----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
-----.

<신 설>

③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 범위에서 감면한다. 단,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설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생략)
 3.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 취하원 제출하였을 때
 4. ~ 6. (생략)
- ② (생략)

제11조(위탁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③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 범위에서 감면한다. 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감면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설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현행과 같음)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 취하원 제출하였을 때
 4. ~ 6.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위탁운영 및 지원) ① -----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 4. (생략)

제15조(손해배상)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련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 등 일체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16조(시설변경 금지)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

<후단 삭제>

1. ~ 4. (현행과 같음)

제15조(손해배상)

<삭제>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련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삭제>

제16조(시설변경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용허가 및 위탁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이를 원상 복구 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등) ① (생 략)

②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에 따라 관계규정에 의거 시정지시·계약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수탁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가입 의무)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수련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인천광

제17조(지도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결
과에 따른 관계규정에 따라-----

-----.

③-----
-----지체 없이-----

-----.

제18조(보험가입 의무) ① -----

-----「청소년활동 진
흥법」 제25조에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준용) -----

-----대하여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
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인

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0조(시행규칙) -----시행에-----
-----.

관계법령 발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계급여
- 2. 주거급여
- 3. 의료급여
- 4. 교육급여
- 5. 해산급여(解産給與)
- 6. 장제급여(葬祭給與)
-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4.12.3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조(구의 책무)

④ 구는 사업자, 구민 및 각종 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고 제2015 - 741호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취지

- 「민법」 개정·시행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인제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관련 별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 제1호의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
 - 제2호의 “한정치산자”를 “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인재육성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893) 및 FAX(560-2716)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이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 개정·시행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인제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관련 별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호의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 - 제2호의 “한정치산자”를 “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 제1조~제5조, 제8조~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개 정 안	“별 지 참 조”
신·구조문대비표	“별 지 참 조”
관계법령 발취	“별 지 참 조”
관련사업 계획	“해 당 없 음”
예산수반사항	“해 당 없 음”
기타 참고사항	“해 당 없 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27조 규정에 의거”를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21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21조”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두터운 자”를 “두터운 사람”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제3조제3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사회내”를 “지역사회 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원활동등”을 “지원활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무수행중”을 “임무수행 중”으로, “가족 기타”를 “가족,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 지역의 특수성등을”을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손상등”을 “손상 등”으로, “잔여”를 “남은”으로 한다.

제9조 중 “상호협력등을”을 “상호협력 등을”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6조 관련)

(단위 : cm)

(앞면)

청소년 지도위원증

①

⑤

②

③

④ ○○ 읍, 면, 동

0.3

1

4

8.1

0.75

0.75

1

0.3

4.9×7.5

(뒷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0.3	1.7	3.2	0.3
5.5			

(비고) 1. 청소년 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m²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 ① 사진(4.9cm×4cm)
-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 ③ 성명
- ④ 소속기관명
-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 ⑥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

2. 한정 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생략)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 3. (생략)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생략)

6. 극히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 10명 내·외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피한정후견인

3.-----
-----있는 사람

4. (현행과 같음)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4. 지역사회 내-----

5. (현행과 같음)

6.-----
지원활동 등

② -----임무수행 중-----
-----가족, 그 밖에-----

-----.

제5조(지도위원의 수) -----

--해당-----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제8조(임기) -----
-----.

단, 지도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잔여
 임기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
 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
 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등을 위하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손상
등-----남은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

 -상호협력 등을-----

 -----.

관계법령 발췌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3.7.]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3.7.]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

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742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1. 개정취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4.5.28.), 시행(2015.5.29.)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행정적·교육적 지원 (안 제3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안 제4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안 제5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인재육성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893) 및 FAX(560-2716)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 정 이 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4.5.28.), 시행(2015.5.29.)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행정적·교육적 지원 (안 제3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안 제4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안 제5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제 정 안	“별 지 참 조”
신·구조문대비표	“해 당 없 음”
관계법령 발취	“별 지 참 조”
관련사업 계획	“해 당 없 음”
예산수반 사항	“해 당 없 음”
기타 참고사항	“해 당 없 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

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가 대행한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743호

공시송달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고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직접방문 및 우편을 이용 하여 이를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변경하는 도로명주소

고지대상자	대지위치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히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 : 2015. 5. 29. ~ 2015. 6. 15.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해당 고시일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 (☎ 032-560-4830)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대상자	송달처 주소	대지위치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사유
1	임**	인천 서구 건지로	인천 서구 석남동	건지로****	2015-05-15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주소불명

